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8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개관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 규모: 지하2~지상4층 / 연면적 8,978.17㎡
- 공간현황: 입주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

나. 위탁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2026. 1. 1.~ 2027. 12. 31.)
 - ※ 위탁기간이 '25.10.31'자로 종료되나,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서울경제진흥원)과 2개월('25.11.1~'25.12.31) 위탁기간 연장 예정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6년 소요예산(안) : 3,225백만원(민간위탁금 등)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관리·보육·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VC·AC 등),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
-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
-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 등 동북권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
- 뉴미디어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플랫폼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등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위탁 사무로,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경위

- ' 15. 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발표
- ' 16. 5.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
- ' 17. 9.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 관리·운영 추진 계획 수립
- ' 19. 9.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89회 정례회)
- ' 20. 4. ‘(가칭)창업고도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 ' 21. 5.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 ' 22. 6.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307회 정례회)
- ' 22. 10.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5. 5. 9.) 심의 결과: 적정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11조(협약체결 등)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2025.12.31.) 예정인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민간위탁 재위탁(2026.1.1.~2027.12.31.)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현황

-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밸리 활성화를 주도하고자 기존의 ‘동북권 창업센터’를 개선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개관함(2021.5.).
-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전신인 ‘동북권 창업센터’ 당시 서울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최초 3년간(2019.9.~2022.6.)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후에는 민간위탁 재계약²⁾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창동 아우르네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간을 입주기업 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음.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기준 점수(70점)보다 높은 총점 81점으로 적정 판정(매출 및 투자유치에서 우수 평가)

- 동 기관은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의 발굴·입주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 뉴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서울창업허브 창동 시설 현황 >

◦ 주관부서 : 서울시 창업정책과 창업기반팀 ◦ 수탁기관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 위탁기간 : 2022.11.1.~2025.10.31.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 규 모 : 지하2~지상4층 / 연면적 8,978.17㎡ ◦ 주요기능 :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발굴 및 입주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 •뉴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 인력규모 : 정규직 5명 ◦ 예산규모 : 3,174백만원 ◦ 공간현황 : 입주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등	
구 분	내 용
2~4층	운영사무실, 입주기업 사무실(30실), 협업공간, 휴게공간 등
1층	비즈니스 라운지, 협업공간, 네트워킹 공간, IR 룸 등
지하1층	XR스튜디오, 온라인콘텐츠 제작·송출, 인플루언서 대기 공간 등
지하1층~1층	대강당, 계단형 강의장, 라운지, 휴게실, 야외공간 등
지하2층	입주기업·방문객 주차장

- 동 기관은 최근 3년간 창업기업 753개사를 지원하고, 투자유치 410억 2천 4백만원, 기업매출 997억 8천 5백만원, 신규고용 798명 등의 운영성과를 보고함.

< 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2022~2024년) >

구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 참여기업 수	753	275	230	248
매출액(백만원)	99,785	19,628	34,761	45,396
투자유치(백만원)	41,024	26,384	12,066	2,574
신규고용(명)	798	247	262	289
판로개척 지원(개사)	506	156	200	150
스튜디오 이용자(명)	51,040	14,795	14,685	21,560
지식재산권(건)	340	116	68	156
공실(개/30실)	11	2	5	4
공실 해소 평균기간	4개월	4개월	4개월	4개월

- 그리고 동 기관은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공통사무 20.1점, 개별사무 49.14점, 사용자만족도 17.88점을 받았고, 별도 감점은 없어 종합점수 87.12점을 받았음.

3.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

-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 제18조³⁾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민간위탁 재위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동 시설은 동북권 창업거점으로서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⁴⁾ 요건에도 부합함.
- 다만, ‘서울창업허브 창동’의 투자유치 실적은 2021년 283억 8천만원에서 2024년 25억 7천 4백만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3)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요건

① 시 소관사무 ② 공공성·공익성 ③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④ 경쟁가능성 ⑤ 책임성

글로벌 투자시장의 변화로 인해 전반적인 국내기업 투자가 위축되었고, 투자유치 보다 입주기업들의 매출 증대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입주 기업 매출액 '21년 124억 1백만원 → '24년 453억 9천 6백만원)라는 입장임.

- 그러나 2024년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FDI)은 2023년에 145억 5천 4백만 달러, 2024년은 129억 4천 2백만 달러로 각각 역대 최대 투자유치액 2위,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내는 등 투자유치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 최근 5년간('21~'25) FDI 현황 >

단위: 억불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시 FDI	179.6	107.3	145.5	129.4	38.4
대한민국 FDI	295.0	304.4	327.1	345.7	131.0

※서울시 FDI 순위 : '21년 179.6억불(1위), '23년 145.5억불(2위), '24년 129.4억불(3위)
 ※대한민국 FDI 순위 : '24년 345.7억불(1위), '23년 327.1억불(2위), '22년 304.4억불(3위)

-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창동에 대한 투자유치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투자유치 지원 역량 보완과 단기 투자 멘토링 지원사업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 이에 더해 동 민간위탁 결과보고서상 투자유치의 감소와 그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만큼 투자유치 증감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지표에 투자유치 성공률, 후속 투자 유치율 등 보다 세분화된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